

전주지방법원 2024. 10. 11 선고 2024가단1864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9. 13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1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. 4. 2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24. 4. 11. 접수 제21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허윤범

별지